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봉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제안이유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민간의 활동에 따른 인적·물적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재난현장에서의 민간의 소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따른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민간자원 보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재난현장에서 민간인 최초 목격자에 따른 긴급조치활동 등을 함에 있어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재난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현대의 재난관리체계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적영역이 강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갖추어야 함.
-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함에 있어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효율적인 재난현장활동에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보유 재난자원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함에 따른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민간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소방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인적(부상·사망) 보상은 물론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8. 14.~'17. 8.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현장에서 민간인 최초 목격자에 따른 긴급조치활동 등을 함에 있어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재난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